그렇습니다! '자본시장법'이야말로 현재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유일무이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자본시장법에서는, 그 동안 존재했다가 없어진 법들과는 달리,

금융투자회사들을 회사별(금융회사별)로 규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융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기능별로 규율을 합니다.

#### ◆ 자본시장법의 6가지 금융업무

\_

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업무별로 크게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.

\_

## <u>(1) 투자매매업</u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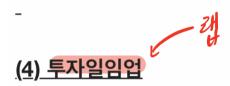
금융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, 증권의 발행, 인수, 청약권유 및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. (사실 이 업무는 금융회사가 자신이 투자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일반 고객과는 상관없는 업무겠죠. 예를 들면, 대우증권이 직접 자기 돈으로 국공채에 투자하는... 뭐 그런 업무니까 말입니다.)

### <u>(2)</u> 투자중개업

금융회사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, 증권의 발행, 인수, 청약권유 및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. (쉽게 설명하면 일반 고객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의 HTS를 이용합니다. 이때 증권사는 투자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수료만 떼어 먹는데 이런 업무를 말하죠. – 물론, 이러한 수수료 장사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중개업 중 극히 일부에 속하겠지만 말입니다.)

### <u>(3) 집합투자업</u>

<u>두 사람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(집합해서) 이를 금융투자상품에</u> <u>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 (즉, 우리가 알고 있는</u> <u>펀드투자라 보면 됩니다.</u>)



<u>돈은 고객의 명의로 하고, 투자도 고객의 명의로 합니다. 다만, 투자판단을</u> 전부 또는 일부 위임받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
# (5) 투자자문업

<u>이 역시 돈은 고객의 명의로, 투자도 고객의 명의로 합니다. 다만, 고객이</u> <u>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문에만 응해주는 업무를 말합니다.</u>

(6) 신탁업 元 or 4元 24

<u>`남의 재산을 대신 맡아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.</u>